

제302회 임시회
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18. 3. 14(水)

검 토 보 고

- 자치행정국 소관 -

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 원 균

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

1. 제안 이유

- 조례 설치 근거 법률 및 회계관직 명칭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 설치 근거 법률 변경(안 제1조, 안 제7조)
-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(행정안전부 훈령)에서 정한 회계관직 반영(안 제2조)

3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회계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설치 근거 법령을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지방회계법」으로 변경하고,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추가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어 금번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,
 - 「지방재정법」에서 ‘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’ 조항이 삭제되고 「지방회계법」이 제정된 시기(2016.11. 30.)를 감안한다면, 상위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이 시기적절하게 조례개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조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.